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 21 선고 2015가단67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청구]

전 문

원고양지원

판 결

사 지 2015가단6794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청구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1. F

2. G

3. H

변론 종결 2015. 12. 10.

판결 선고 2016. 1. 21.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6.

7. 27. 접수 제831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G은 같은 등기소2014. 12. 17. 접수

제1891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I의 처이고, 망 I 과 원고 A 사이 자녀로는 망 J, 원고들, K가 있다.나. 망 I 이 2006.

5. 19.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원고 A가 3/15, 자녀인 망 J, 원고들및 K가 각 2/15의 비율로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7.

27.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망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망 J는 2014. 11. 12. 사망함으로써 그 배우자인 피고 F이 3/7, 그 사이의 자녀인 피고 G, H이 각 2/7의 비율로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2. 17. 피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사실상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들은 적어도 2012. 3. 10. 이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 J는 망 I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K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었음에도 몰래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망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원인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G은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그 등기원인과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백석1동장, 대신동장, 신당동장, 신사동장, 교하동장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분할협의서 등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등기무렵인 2006. 6. 22.부터 2006. 6. 27.까지 사이에, K는 이 사건 상속등기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이전인 2006. 3. 23. 본인들이 직접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점,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이 사건 상속등기를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본인들이 스스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의 용도에 관하여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속등기 당시 제출된 서류는 5년의 보존기간만료로 폐기되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 J가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였는지 여부는 알수 없는 점, 또한 망 I 소유의 서울 종로구 L 소재 부동산은 망 I의 사망일로부터 불과 2개월 이전인 2006. 3. 6. 원고 A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상속등기와 동시에 원고 A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1. 4.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등기가 마쳐진 바 있는데, 망 I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상속등기가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경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아파트 제302동

[도로명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풀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경사스라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502.74㎡

2층 490.14㎡

3층 490.14㎡

4층 490.14㎡

5층 490.14㎡

6층 490.14㎡

7층 490.14㎡

8층 490.14㎡

9층 490.14㎡

10층 490.14㎡

11층 490.14㎡

12층 326.76㎡

13층 326.76㎡

14층 326.76㎡

15층 326.76㎡

지층 472.8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2층 제1204호

풀근콘크리트 벽식구조

69.09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대 42990.4㎡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2990.4분의 49.3331.끝.